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2나46253(본소), 2022나46260(반소)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 손해배상(기)]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2나46253(본소), 2022나46260(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가단503153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이성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변론 종결2024. 3. 12.

판결 선고2024. 4. 9.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가단5031534(본소),

2020가단5181651(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24. 4.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8,56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9,598,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22.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9,598,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판결이유 중 일부(제1심판결문 제6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과 제7쪽 제6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를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③, ④, ⑤, ⑦ 비용은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금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해당 금액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근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⑥ 코킹공사대금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계약서에 코킹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명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9 내지 21호증, 을 제14,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4. 9.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D 건물 외벽 석재실리콘 공사에 관한 외부코킹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상 공사기간은 2019. 4. 15.부터 2019. 4. 24.까지이고 공사대금은 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 실제로 원고가 2019. 4. 16.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건물 외벽 실리콘작업을

진행한 사실, 원고는 2019. 7. 26. 위 외부코킹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5,450,000원의 청구채권을 M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공사비 외에 위 외부코킹공사대금 5,000,000원(=9,500,000원+부가가치세 950,000원-M에게 양도한 5,4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7쪽 제6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65,500원(= 코킹공사비용 5,000,000원+인건비 39,634,500원+잔금 15,431,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55,065,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5. 29.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7.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5. 29.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상아

판사송영환

판사김동현